

도지사 공약사업 관리카드

공 약 명	어르신 조세부담 완화				관리번호	1-8
추진부서	세정과	담 당 자	김정해	전화번호	2340	
협조부서	-					
실천목표	임기 내 완료		추진상황	완료		

□ 사업개요

- 지원시기 : 2022~2023년
- 사 업 량 :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
- 총사업비 : 비예산 사업
- 공약내용 : 세부담이 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재산에 부과되는 도세 감면 추진('22.4.)

※ '22년 이미 공약이 달성되었으나, 추가하여 도세 감면

'22년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경감(1인당 약 1만 원, 총 34억 원)함으로써 이미 공약이 완료됨

□ 추진실적

《기 추진실적 : '22. 12월말》

○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

[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(60→45%)]

- ① 세부담 완화 관련 행안부-자치단체 회의 및 의견 조회('22. 6월)
- ②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추진 및 시행령 개정('22. 6월)
 -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확정(60→45%) 및 적용
 - '22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(주택분) 경감(1인당 약 1만 원, 총 34억 원)

《2023년 1분기 추진 내용》

○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

① 입법예고 : '23.3.15.~3.30.(완료)

- 감면대상 :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
- 감면세목 : 재산세(주택분)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
- 감 면 율 : 각각 50%
- 적용시기 : 2023.7월 재산세(주택분)부터 적용
- 감면효과 : 연간 578백만 원 추정

《2023년 2분기 추진 내용》

○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

① 제319회 임시회 「강원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원안 가결

→ 「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」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감면 조항(제2조의 2) 신설('23.5.24)

- 감면대상 :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→ 95,549명
※ 2021년 기준 강원도 총 155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 33만 명(21.4%)
- 감면세목 : 재산세에 포함된 도세 →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
- 감 면 율 : 각각 50%
- 적용시기 : 2023.7월 재산세(주택분)부터 적용(2023년 1년간 감면)
- 감면효과 : 연간 578백만 원 → 1인당 6,050원 부담 완화 효과

《현재까지 목표달성》

주요사업	목표치(2023)	추진상황 (완료/추진중/미착수)	추진내용
어르신 조세 부담완화	도세감면(재산세 부가세) ① 지역자원시설세 ② 지방교육세	완료 (추가 추진중)	① 입법예고 : '23.3.15.~3.30 ② 제319회 도의회에서 「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」 원안가결 →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감면 조항 (제2조의 2) 신설('23.5.24) ③ 지방세정보시스템 감면코드 개발 완료

② 조례개정 후속 조치 이행(재산세 부과 등)을 위한 「지방세정보시스템」 감면코드 개발 완료

-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(30여회)을 통한 「지방세 정보시스템」 상 재산세(주택분)의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조항 신설

《2023년 3분기 추진 내용》

○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추진 완료

① 공약의 가장 빠른 이행시기인 2023.7월 재산세(주택분)부터 적용 완료

《2023년 4분기 추진 내용》

○ 민선8기 공약사업(어르신 조세부담 완화) 추진 완료

- (공약내용)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재산에 부가되는 도세 감면('22.4월 현장공약)

- (추진경과)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('23. 5. 24.)

①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감면 조항 신설

② 「지방세정보시스템」 상 재산세(주택분) 감면 조항 전국 최초 신설

- (주요내용)

① 감면대상 :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

② 감면세목 : 재산세(주택)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

③ 감 면 율 : 각각 50%

④ 적용시기 : 2023년 7월 재산세(주택)에 적용(2023년 1년간 감면)

→ 전국최초 어르신 10만 명 이상(110,863명) 감면 혜택, 총 558백만 원

<기대효과>

- 민선8기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빠른 시기에 이행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했고, 세부담이 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지방세 부담 완화에 기여함